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2. 8. 17.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8월 17일(수) 16:00~18:21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송 창 영 위 원

박 중 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2년도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및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41호 『코레이트자산운용(주)와 코레이트투자운용(주)의 합병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에서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42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

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음. 개인투자자의 공모펀드 선호가 저하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함. 공모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점과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인 것 같음. 투자자들에게 펀드 운용자의 과거 성과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서 공모펀드의 판매수수료 및 운용수수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음.

- (보고자)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사항의 내용을 보면 '자기자본의 1% 이상 더 투자를 하면 감독상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같이 이해관계를 일치시켜보자.' 이런 내용이 있음. 그리고 그동안은 성과보수라고 하면 일방향이었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대칭형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기간을 파악해서 최적의 수수료를 추천하라는 의무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반영하였음.

- 원안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결함

- 의결안건 제143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

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4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34호 『대량보유 보고의무(5%를) 관련 제도운영 개선방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35호 『전환사채 시장동향 및 관련 제도개선방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call)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발행조건을 부과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회사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경우 사실상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콜(call) 행사자로 지정을 해서 상당히 낮은 가격에 지분을 취득하는 그런 회사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음. 특히 코스닥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종의 배임적 요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음. 실제로 대표이사에게 콜옵션(Call option)을 줘서 대표이사가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해서 최대주주로 등극한 사례도 있었음.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풋(Put)과 콜(Call)을 이렇게 동시에 부여하는지?

- (보고자) 동시에 부여하고 있지는 않음.

- (위원) 풋(Put)을 부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콜옵션(Call option)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리픽싱(Refixing)보다 더 심각한 것이 콜옵션(Call option)을 부여해서 특수관계자의 지배권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편법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음. 그래서 만약에 상환전환우선주나 전환우선주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회사들이 CB나 BW 대신 상환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임. 그리고 상환전환우선주나 전환우선주의 경우에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콜옵션(Call option)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지?

- (보고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콜옵션(Call option) 부과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장에서 실제 관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반영해서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본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45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36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긴급조치 결과보고』, 보고안건 제37호 『○○○○(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긴급조치 결과보고』, 보고안건 제38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긴급조치 결과보고』, 보고안건 제39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긴급조치 결과보고』를 일괄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같음함.

○ 각각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146호 『(주)자유투어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47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은 (주)○○○○○○에 9억 9,8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 9억 9,800만 원이 2014년 회기 중에 모두 (주)△△△△△로 감. 따라서 ○○○의 9억 9,800만 원이 매출채권 가장회수에 쓰였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얘기이며, 금감원의 주장대로 9억 9,800만 원에 대해 (주)○○○○○○가 ○○○의 차입금으로 계상을 해야 한다면 거꾸로 (주)○○○○○○가 (주)△△△△△에 준 돈은 (주)○○○○

○○ 입장에서는 (주)△△△△△의 대여금이 되어야 할 텐데, 금감원은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음. ○○○에 대한 차입금만 잡으라고 한다면 거꾸로 원래 (주)○○○○○○○나 ○○○(주)(舊○○○○○○○)가 갖고 있었던 것보다 동 금원만큼 회사의 실체를 역으로 반영하는 것이 됨.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오인을 하고 있는 사항임.

- (보고자) 저희가 지적하는 내용은 정상적인 영업과 판매에서 매출에 대한 대금이 위탁판매대금으로 회수가 되어야 할 텐데 (주)○○○○○○○의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약 10억 원 가량의 자금이 지금 현재 진술인이 마련한 자금 중에서 (주)△△△△△의 명의로 입금이 되고 (주)○○○○○○○가 동 자금을 위탁판매대금으로 회수한 것처럼 해서 유네코 (주)에 송금하는 형식으로 정상적인 위탁판매대금이 회수되는 것으로 가장한 것을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것임. 추가로 2016년 4월에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자금이 유사한 형태로 송금된 것이 저희가 지적하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니까 그 거래 이외의 거래들을 진술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논점을 흐린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음.
- (위원) (주)△△△△△과 2020년 9월16일에 작성하셨던 민사 소송 준비서면을 보면 ‘대표이사 ○○○은 2014년경부터 대손상각 급증으로 인한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스스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여 피고가 변제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준비서면에 기록되어 있음. 그러면 이것은 거짓으로 기재한 것인지?

- ▶ (진술인) 변호인이 기재하였음.
- (위원) 2020년 재무제표에 대해서 외부감사인 역시 유사한 이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했음. 거절사유를 보면 '마치 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외부감사인이 2020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면 당연히 감사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지?
- ▶ (진술인)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했었어야 하나 저는 3월31일에 회사에서 쫓겨났음. ○○○(주)(舊○○○○○○)는 코로나로 인한 감사보고서 지연제출 제재면제 기업으로 감사보고서 공시가 5월17일에 됐기 때문에 저를 쫓아낸 現 경영진과 감사인이 알아서 하는 일이었음.
- (위원) ○○○ 대표께서 (주)○○○○○○에 9억 9,800만 원을 입금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 ▶ (진술인) (주)△△△△△△의 자금유통을 위해서 (주)○○○○○○○에 입금을 하였음.
- (위원) 그러면 (주)△△△△△△에 왜 직접 입금을 안 하셨는지?
- ▶ (진술인) (주)△△△△△△에 넣었으면 ○○○(주)(舊○○○○○○○)의 45일 동맥경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 前대표이사께서 자기가 (주)○○○○○○○에 9억 9,800만 원을 입금했고 그 금액이 (주)△△△△△△에 그대로 재입금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인지?

- (보고자)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 자금의 최종 종착지는 모두 ○○○(주)(舊○○○○○○○)로 확인되었음. 일부 4억 7,000만 원이 (주)△△△△△△로 갔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금액도 결과적으로는 상당부분의 금액이 다시 ○○○(주)(舊○○○○○○○)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음.

○ (위원) 추가적으로 과징금 이런 것이 감경될 가능성이 없는 사항인지?

- (보고자) 안건 작성 기준시점인 2022년 1분기말 기준, 이 회사의 가용한 현금이 8억 6,300만 원으로 지금 부과예정액인 9억 4,600만 원보다 적음.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에 따라 지금 현재 1분기말을 기준으로 하면 증권발행제한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반기재무제표 작성 기준일인 2분기말을 기준시점으로 하게 되면 증권발행제한으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보고안건 제40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내부통제 개선권고 조치 관련 개선계획 점검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41호 『(주)셀트리온의 내부통제 개선권고 조치 관련 개선계획 점검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42호 『(주)셀트리온제약의 내부통제 개선권고 조치 관련 개선계획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각각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8시 21분 폐회)